

「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」 제정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드론 사용사업자 중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·지원하기 위해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, 국내 드론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우수사업자의 지정대상 및 평가(안 제3조, 제5조)

「드론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요건*을 갖춘 국내 드론 사용사업자를 우수사업자 대상자로 하고, 심사항목은 경영상태·기술역량·수행능력을 평가

* 3년 이상 사업자, 과징금·과태료·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, 비행사고가 없

는 자

나.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등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)

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의 구성(위원장 1인 포함 10명)·업무*·임기(2년)·운영(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등) 및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등 마련

* 우수사업자 평가·선정 및 지정취소, 기타 지정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

다.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(안 제12조, 제13조)

우수사업자 인증서·인증마크 발급, 해외진출 지원, 형식적인 절차의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*, 드론시스템 연구·개발,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

* 해외 드론박람회 판촉지원 및 드론기체 안전성 인증절차 간소화 등 지원

라.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절차(안 제14조)

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의 지정취소, 효력정지 근거 및 청문 등 지정취소 절차 마련

마. 관련 서식 등 마련(별표 1~2, 별지 제1호, 제2호서식)

우수사업자 세부평가항목(별표1), 인증마크(별표2),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(별지1) 및 인증서(별지2) 마련

2. 의견제출

이 「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」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. 5. 30일 까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현 행	개 정 안	의 건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5동, 우편번호 30103)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
(전화 044-201-4253, 4308)